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3월 02일 04시 58분



목차

목차	2
특정공사 사전 신고	3
특정공사 사전신고	3
특정공사 사전신고	3
근거 규정	3
신고주체	3
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·장비의 종류(시행규칙 별표9)	3
신고시 필요서류	3
특정공사 사전신고 제외대상	4
특정공사 변경신고	4
변경신고의 대상	4
제출서류	4



특정공사 사전신고

생활소음·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고,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.

특정공사 사전신고

📍 근거 규정

소음·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,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

📍 신고주체

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(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)

※ 특정공사 :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·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다음의 공사

-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
-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
-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(☒☒☒)·정지공사(☒☒☒☒)
-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
- 영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
- 변경내용 증명 서류

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·장비의 종류(시행규칙 별표9)

항타기·항발기 또는 항타형발기, 천공기, 공기압축기, 브레이커(휴대용 포함), 굴삭기, 발전기, 로더, 입쇄기, 다짐기계, 콘크리트 절단기, 콘크리트 펌프

📍 신고시 필요서류

- 특정공사의 개요(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)
- 공사장 위치도(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)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- 방음 · 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
- 그밖의 소음 · 진동 저감대책

특정공사 사전신고 제외대상

- 환경부 장관이 저소음 · 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 · 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 · 장비를 사용하는 공사
- 다음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
 - >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. 다만, 산업단지 중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.
 - >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에 따른 전용공급지역
 - >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- 생활소음 · 진동이 발생하는 공장 · 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(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), 운동 · 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

특정공사 변경신고

근거 규정 : 법 제22조제2항, 시행규칙 제21조제4항

변경신고의 대상

-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 · 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
-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
- 방음 · 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
- 소음 · 진동 저감대책의 변경
-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

제출서류

- 변경신고서(별지 제12호 서식)
-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
-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
- 변경에 따른 소음 · 진동 저감대책

Yeosu Web Contents

